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용도분류	냉방 또는 난방 설비 설치 여부	면적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1. 단독주택 5. 문화·집회시설 중 (마목 : 동·식물원)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예외 대상		X
3. 제1종 근생 중 (아목) 13. 운동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 자원순환 관령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설치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설치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X
	미설치	관계없음	X
2.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제1종 근생 (아목 제외) 4. 제2종 근생 5. 문화·집회시설 (마목 제외)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28. 장례시설 29. 야영장시설	냉방 또는 난방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음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X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 성능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임			X

▶ 적용 예외 대상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범위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적용 예외 조건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범위는 아래 표와 같음
 - 일반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 의무사항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 권장사항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2. 에너지성능지표)
 - 소요량 평가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3.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구분	내 용		에너지절약계획서			
			①	②	③	④ ^{주1)}
제2호 주2)	공공건축물 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공공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제4호 및 제6호	열손실 변동 유 ^{주3)}	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경우	○	○	○	-
		② 별도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③ ①, ②를 제외한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열손실 변동 무 ^{주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제5호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5백㎡ 이상 2천㎡ 미만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 개별동	○	○	-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개별동	○	○	○	○
제8호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200kWh/㎡ 미만(공공의 경우 140kWh/㎡)인 경우	○	○	-	○

주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경우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출 필요

주3)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허가행위가 중복되어 신청되는 경우 열손실변동 면적을 합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범위 판단

주4)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필요